

-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 및 KOSHA-MS 전환대응을 위한 -
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변경안내

제도개선부 운영주



1 인증업무처리규칙 제·개정(안) 비교

2 향후 추진계획

1 인종업무처리규칙 제·개정(안) 비교



인증업무처리규칙 제·개정(안)

KOSHA 18001[안]	KOSHA-MS[안]
<p>제2조[정의] “추가”</p> <p>23. 심사팀 보조자(이하 “심사원보” 라 한다)란 제19조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단에서 시행하는 심사원 시험에 합격한 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의 실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입증된 자로 심사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말한다.</p>	<p>제2조[정의]</p> <p><신설></p>
<p>24. “전환” 이라 함은 이 규칙에 따른 인증심사원(심사원보 포함) 및 인증사업장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(KOSHA-MS) 인증업무처리규칙에 의거한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.</p>	<p><삭제></p>

인증업무처리규칙 제·개정(안)

KOSHA 18001(안)	KOSHA-MS(안)
<p>제3조(적용범위)</p> <p>① 이 규칙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.</p> <p>②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, 건설사업관리·설계 및 감리 또는 시공하는 사업·사업장으로서 사업주가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하되,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발주기관 2. CM·설계 및 감리업체 3. 종합건설업체 4. 전문건설업체 	<p>제3조(적용범위)</p> <p>① 이 규칙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,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 적용한다.</p> <p>②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를 발 또는 시공하는 사업·사업장으로서 사업주가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하되,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발주기관 2. <삭제> 3. 종합건설업체 4. 전문건설업체

인증업무처리규칙 제·개정(안)

KOSHA 18001(안)	KOSHA-MS(안)
제5조(계약)	제5조(계약)
① ~③ [생략]	① ~③ [현행과 같음]
④ 일선기관장은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이 다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별표 5에 따른 심사일수를 최대 1/2 까지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다.	④ 일선기관장은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이 다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별표 5에 따른 심사일수를 최대 1/2 까지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다. 다만 전업종의 경우, 2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한다.

인증업무처리규칙 제·개정(안)

KOSHA 18001[안]	KOSHA-MS[안]
제11조[인증서와 인증패의 교부]	제11조[인증서와 인증패의 교부]
① ~⑤ [생략]	① ~⑤ [현행과 같음]
<p>⑥ 이사장은 인증 신청 사업장이 공단과 공동인증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인증기관(이하 “공동인증기관”이라 한다)의 인증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인증기관과 협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.</p>	⑥ <삭제>
<p>⑦ 이사장이 제6항에 따라 공동인증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여 심사하여야 하며, 심사 시 공동인증기관의 심사원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.</p>	⑦ <삭제>

인증업무처리규칙 제·개정(안)

KOSHA 18001[안]	KOSHA-MS[안]
<p>제11조[사후심사]</p> <p>④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심사를 필요에 따라 외부 안전보건전문기관 또는 공동인증기관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시행에 필요한 절차, 방법,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.</p>	<p>제12조[사후심사]</p> <p>④ <삭제></p>
<p>제13조[인증의 취소]</p> <p>1 [생략]</p> <p>2.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심사 또는 연장심사를 거부하는 경우</p> <p>3. 공단으로부터 인증 취소 사유에 대하여 2회 이상 시정요구 등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</p> <p>4.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위배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</p>	<p>1 [현행과 같음]</p> <p>2. ----- · 기피 · 방해-----</p> <p>3. ----- 부적합사항----- -----</p> <p>4.<[삭제]></p>

인증업무처리규칙 제·개정(안)

KOSHA 18001[안]	KOSHA-MS[안]
제13조[인증의 취소]	제13조[인증의 취소]
5. [생략]	5. [현행과 같음]
6. 인증 이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고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. 다만, 건설업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 최근 3년간 연속해서 1,000대 건설업체 평균환산재해율 이상이고 환산재해율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	6. 인증 이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고사망만인율 이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. 다만, 건설업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은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이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
7 ~ 10 [생략]	7 ~ 10 [현행과 같음]
<신설>	11. 인증사업장이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

인증업무처리규칙 제·개정(안)

KOSHA 18001(안)	KOSHA-MS(안)
<신설>	제28조(심사원보 자격의 소멸) 시험합격일로부터 3년 이내 심사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심사원보는 그 자격이 소멸된다.

인증업무처리규칙 제·개정(안)

KOSHA 18001(안)	KOSHA-MS(안)
<p>제28조의2(심사비의 감면)</p> <p>이사장은 제2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대하여는 심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건설업 : 발주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. 건설업외 : 군부대, 사회복지시설, 사회적기업 <p>3.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기술지도 A등급 사업장과 A등급 사업장의 사내·외협력업체</p>	<p>제30조(심사비의 면제 또는 감면)</p> <p>① 이사장은 제2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비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 제 2호의 경우 심규 인증신청에 따른 실태심사·인증심사·사후심사(첫 번째 연장심사 전까지에 한함)비용을 전부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~ 2 [현행과 같음] 3. <삭제> <p>② 이사장은 제2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사비를 1/2 감면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기술지도 A 등급 사업장과 A 등급 사업장의 사내·외 협력업체의 경우 다음연도 심사비용 2.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인증심사·사후심사(첫 번째 연장심사 전까지에 한함)비용



인증업무처리규칙 제·개정(안)

KOSHA 18001(안)	KOSHA-MS(안)
부칙	부칙
<p>제1조(목적) 이 부칙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 18001)[이하 “이 규칙” 또는 “구[舊]규칙” 이라 한다]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-MS)[이하 “신[新]규칙” 이라 한다]간 인증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
<p>제2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시행일로부터 3년(2022.06.30) 이후 폐기한다.</p>	
<p>제3조(KOSHA 18001 인증유효기간) ① 구[舊]규칙(KOSHA 18001)에 따른 인증의 최대 유효기간은 제2조 시행일로부터 3년의 종료일(2022.06.30.)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② 제2조 시행일부턴은 구[舊]규칙(KOSHA 18001(제 841호))에 따른 신규 인증신청을 받지 아니 한다.</p>	

인증업무처리규칙 제·개정(안)

KOSHA 18001(안)	KOSHA-MS(안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4조(인증사업장 경과조치) ① 제2조 시행일 이전에 구(舊)규칙(KOSHA 18001)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사업장은 제2조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 신(新)규칙(KOSHA-MS)에 따라 사후·연장심사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구(舊)규칙(KOSHA 18001)에 따른 인증은 자동 소멸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
<p>제5조(심사원 경과조치) ① 제2조 시행일 전에 구(舊)규칙(KOSHA 18001)에 따라 심사원으로 등록한 자는 전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구(舊)규칙(KOSHA 18001)에 따라 심사원자격을 취득한 심사원은 제1항에 따른 전환교육을 이수한 후, 신(新)규칙(KOSHA-MS)의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전환교육은 시행일 이후 3년간 실시한다.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전환교육을 제3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수하지 않은 자는 구(舊)규칙(KOSHA 18001)에 따른 심사원자격이 소멸된다.</p>	



인증업무처리규칙 제·개정(안)

KOSHA 18001(안)	KOSHA-MS(안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6조(심사원보 경과조치) ① 구(舊)규칙(KOSHA 18001)에 따라 심사원보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2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심사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구(舊)규칙(KOSHA 18001)에 따른 심사원보의 참여 실적은 신(新)규칙(KOSHA-MS) 시행일 이후에도 인정된다. 다만, 구(舊)규칙(KOSHA 18001)에 따른 심사원보 자격자가 신(新)규칙(KOSHA-MS)에 따른 심사에 보조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에 앞서 제5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심사원보 중 제2조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원으로 미등록 시, 구(舊)규칙(KOSHA 18001)에 따른 심사원보 자격이 소멸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

인증업무처리규칙 제·개정(안)

KOSHA 18001(안)	KOSHA-MS(안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7조(심사원의 심사범위) ① 구[舊]규칙(KOSHA 18001)에 따라 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, 제5조 제3항에 따른 전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심사원은 구[舊]규칙(KOSHA 18001)에 따른 심사에만 참여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[舊]규칙(KOSHA 18001)에 따라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고 제5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육을 이수한 심사원 또는 신[新]규칙(KOSHA-MS)에 따라 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심사원은 구[舊]규칙(KOSHA 18001) 과 신[新]규칙(KOSHA-MS)에 따른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

인증업무처리규칙 제·개정(안)

KOSHA 18001(안)	KOSHA-MS(안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8조(인증전환심사) ① 구(舊)규칙(KOSHA 18001)에 따라 예정된 사후심사 또는 연장심사와 병행하여 전환심사를 수행할 경우, 전환심사일수는 신(新)규칙(KOSHA-MS)에 따른 사후심사일수의 20%를 추가한다. 다만 전환심사는 최소 1MD(man · day)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② 전환심사일수 산정 시 사후심사일수의 20% 계산 결과의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 처리한다.</p> <p>③ 전환심사 심사비는 신(新)규칙(KOSHA-MS) 별표5 심사비를 따른다.</p> <p>④ 전환심사 신청은 사업장에서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

인증업무처리규칙 제 · 개정(안)

KOSHA 18001(안)

[별표5]

2. 최소 심사일수

구 분	실태심사	인증심사	사후심사	연장심사
50인 미만	2	2	1	2
50인 ~99인	2	3	2	3
100인 ~299인	3	4	3	4
300인 ~999인	3	5	4	5
1,000인 ~1,999인	4	6	5	6
2,000인 ~4,999인	5	8	6	7
5,000인 ~9,999인	6	10	7	8
10,000인 ~19,999인	7	12	8	9
20,000인 이상	8	14	9	10

KOSHA-MS(안)

[별표5]

2. 최소 심사일수

구 분	실태심사	인증심사	사후심사	연장심사
20인미만	1	2	1	1
20인 ~49인	2	2	1	2
50인 ~99인	2	3	2	3
100인 ~299인	3	4	3	4
300인 ~999인	3	5	4	5
1,000인 ~1,999인	4	6	5	6
2,000인 ~4,999인	5	8	6	7
5,000인 ~9,999인	6	10	7	8
10,000인 ~19,999인	7	12	8	9
20,000인 ~31,999인	8	14	9	10
32,000인 ~49,999인	10	17	10	15
50,000인 ~69,999인	12	19	11	18
70,000인 ~99,999인	15	22	12	21



2 향후 추진계획



향후 계획(안)

1. 심사원 자격 전환(예정)

- 전환교육기관 : 산업안전보건교육원
- 교육시간 : 1일 8시간
- 교육계획 : 19년 6월(2회)부터 심사원 전환교육 개시



향후 계획(안)

4. 사업장 인증전환(예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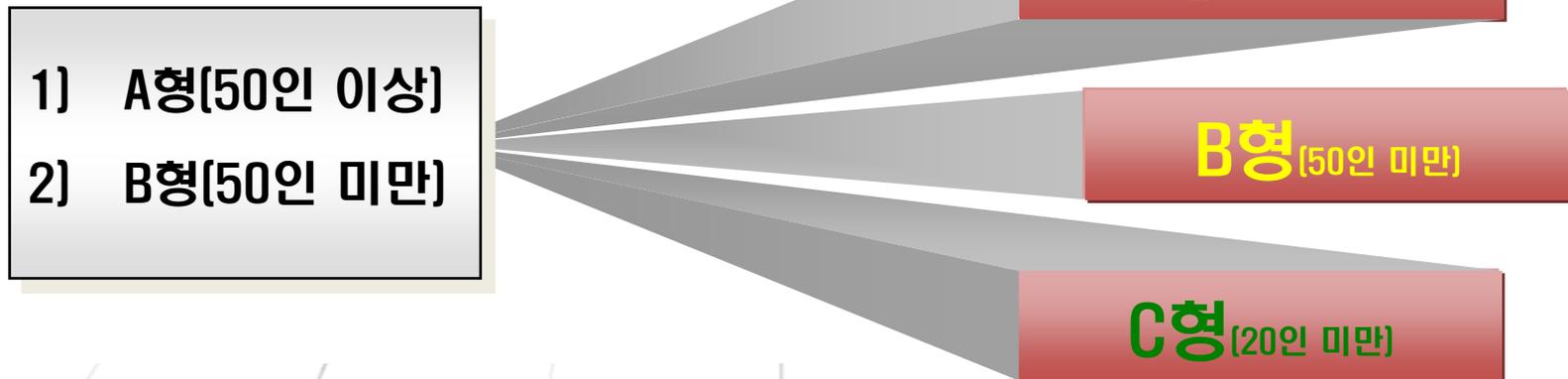
- 사후 또는 연장심사 단계에서 신청
- 전환심사 : KOSHA-MS 사후심사일수의 20% 추가



향후 계획(안)

5. 안전인증기준의 세분화

- A형 :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조직이 갖춰진 사업장에 적용
- B형 : 안전보건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(현장작동형)
- C형 :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적용(위험성평가, 법규, 리더십)





감사합니다!